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전방조종자동차(7~10인승)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함(안 제17조제1호)

3. 참고사항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7조제1호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